



#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February 17, 2025



## Table of Contents

### Tax News

- 국세청,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최신 예규 · 판례

-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 연구 개발비의 R&D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 포함 여부
-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1개 과세연도 소득공제 일괄 적용 시 공제한도 적용방법

# Tax News

## 국세청,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은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등을 포함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포함된 세무조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선정기준 공개	각종 훈령에 산재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선정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공개
조사권 남용 방지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등 보호조치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 강화
조사규모 유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의 허용 범위 내에서 탄력적 관리 (2021년: 14,454건 → 2022년: 14,174건 → 2023년: 13,973건 → 2024년: 14,000건 (잠정))
조사운영 개선	개인 무작위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되,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조사 실효성 제고
제재수단 강화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지속 추진
조사선정 정교화	조사사례·신고자료 등 빅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 정기조사 선정 정확도 향상 (2024년 법인조사 → 2025년 개인조사 확대) * 비정기조사 선정에 있어서도 AI 탈세적발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성·객관성 개선 예정
정보인프라 보강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개별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여 해외금융정보 수집역량 강화
민생침해 엄단	불법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에 대해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끈질기게 조사
불공정 근절	일감 떼어주기·불공정 합병 등 부당한 특혜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과세하여 시장질서 회복에 선한 영향력 확대
신종탈세 차단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나날이 지능화되는 변칙탈세에 대한 검증 강화
체납추적 강화	대여금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은닉재산 색출과 고강도 현장추적조사에 더해, 효율적인 국가 간 징수공조로 손에 잡히는 성과 도모



##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소비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반기 추가소비분(전년 대비 5% 이상) 20% 추가 소득공제 추진(별도 한도 100만 원)</li> <li>② 상반기(1월 3일~ 6월 30일) 자동차 출고분 한시로 개소세 30% 인하(<math>5\% \rightarrow 3.5\%</math>, 100만 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한시 감면 추진(<math>\Delta 70\%</math>, 100만 원 한도)</li> </ul> </li> <li>③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관련 세제 개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일몰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li> </ul> </li> </ul>
자본시장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주환원촉진세제·ISA 세제지원 강화 등 벤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 법인세 5% 세액공제</li> <li>② 배당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증가분 등) 저율 분리과세</li> <li>③ 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확대</li> <li>④ 국내 투자형 ISA(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 가능) 신설</li> </ul> </li> </ul>
기업 투자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항구화·2025년 한시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중소) 10% → 12% (중견) 5% → 7% / [신성장] (중소) 12% → 14% (중견) 6% → 8%</li> </ul> </li> <li>② 25년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의 중소기업 적용</li> <li>③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미래형 운송수단 추가</li> <li>④ 첨단 R&amp;D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추진·국가전략기술 R&amp;D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확대*</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R&amp;D시설 투자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세액공제율 적용</li> <li>*2 [대·상]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이용료 등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율] 국가전략기술·일반 R&amp;D 동시 수행 인력에 대해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공제</li> </ul> </li> </ul> </ul>
주력산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반도체특별법 제정 지원 및 반도체 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5%p)</li> </ul>
건설·지역 경기 회복 조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LH·지역주택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은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배제</li> <li>②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2026년 5월)</li> <li>③ 30호 이상 건설·매입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형] (현행) 9억 원 이하 → (개정) 12억 원 이하 [매입형] (현행)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개정) 9억 원(비수도권 6억 원) 이하</li> </ul> </li> <li>④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제외</li> </ul>
핵심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외 우수인재(K-Tech Pass 소지자) 소득세 50% 감면(10년) 적용</li> <li>②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관련 세부담 완화방안 마련</li> </ul>

# 최신 예규·판례

##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 연구 개발비의 R&D 세액공제 적용 여부

(대법2021두55203, 2024. 12. 24.)

### | 쟁점사항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R&D 세액공제 규정(조특법 §10)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 연구 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구 조특법 §9 ⑤, 2019. 12. 31. 개정 전 및 조특법 §2 ① 11호), 이번 판결의 쟁점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상품·서비스 개발과 고객 서비스 등을 위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이하 ‘쟁점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수탁업체에게 위탁한 경우, 쟁점 전산시스템의 위탁 개발이 R&D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이 가능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 판결요지

이에 대해 원심은 쟁점 전산시스템으로 인해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위탁 연구 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연구 개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 전산시스템의 위탁 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전산시스템 위탁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함 (대법2021두55203, 2024. 12. 24.)

### | 시사점

이번 판결은 조특법상 적격 연구개발의 정의가 국제적인 기준, 즉 OECD의 연구 개발 조사를 위한 표준 지침인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의 연구 개발 개념에 따라 정비한 것임을 적시하면서, 적격 연구 개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나 실패의 위험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야 함을 판시하고 있고, 최근 조특법은 연구 개발의 정의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추가하여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에서 제시한 ‘체계성’과 ‘창의성’을 적격 연구 개발의 개념으로 명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조특법 §2 ① 11호, 2024. 12. 31. 개정), R&D 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연구 개발이 적격 연구 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최근 개정된 적격 연구 개발의 범위에 대한 개정규정, 그리고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라스카티 매뉴얼의 연구 개발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452, 2024. 8. 6.)

### | 쟁점사항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령 §19 22호 나목, 이하 ‘쟁점규정’)에 출연한 금품을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령 §19 22호, 2021. 2. 17. 신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의 중간 참여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근로복지기본법 §86의 7, 2020. 12. 8. 신설), 쟁점규정에서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만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간 참여 형식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가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임

### |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내국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미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출연한 금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허용하도록 회신하고 있는 바, 이는 기업의 근로자 복지사업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쟁점규정의 개정취지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중간 참여를 망설이는 사업주의 중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됨 (사전–2024–법규법인–0452, 2024. 8. 6.)

### | 시사점

따라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출연금 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이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중간 참여 형식으로 지출한 출연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세법의 쟁점규정과 유사하게 소득세법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소령 §55 ① 9호 나목),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중간 참여 형식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출연금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퇴직자의 퇴직월 급여 포함 여부 (서면-2024-법인-0694, 2024. 10. 14.)

### | 쟁점사항

현행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조특법 §30의 4), 이 때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에 사회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조특령 §27의 4 ⑥ 1호·⑧·⑨).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월 중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 월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임

### |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월 중 퇴직자가 퇴직 월에 지급받은 급여를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계산하도록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은 상시근로자 총급여액을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고 이 때 월 중 퇴직자는 문언상 퇴직 월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총급여액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므로, 퇴직 월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 월 중 퇴직자의 퇴직 월 급여 역시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됨이 타당함을 고려한 해석으로 판단됨 (서면-2024-법인-0694, 2024. 10. 14.)

### | 시사점

따라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에 월 중 퇴직자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월 중 퇴직자를 퇴직 월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퇴직 월에 지급한 급여 또한 총급여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월 중 퇴직자를 퇴직 월의 상시근로자 수에서만 차감하고 월 중 퇴직자가 퇴직 월에 지급받은 급여를 총급여액에는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을 과다 산정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1개 과세연도 소득공제 일괄 적용 시 공제한도 적용방법 (감심-2023-360, 2024. 10. 17.)

### | 쟁점사항

거주자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출자금의 10%(벤처기업 직접투자 등 30%~100%)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바(조특법 §16 ①, 이하 ‘쟁점 한도규정’), 이번 결정례의 쟁점은 거주자가 2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고 1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쟁점 한도규정에서 말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해석하여 출자한 과세연도 마다 각각 공제한도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해당 과세연도’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로 해석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만으로 공제한도를 산정하는지 여부임

### | 결정요지

이에 대해 이번 결정례는 쟁점 한도규정의 ‘해당 과세연도’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 2007두8584, 2009. 7. 9.)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일괄 적용받고자 선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0%의 공제한도를 일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감심-2023-360, 2024. 10. 17.)

### | 시사점

따라서, 2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벤처기업에 출자하고 거주자가 선택한 1과세연도에 출자금 총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일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일괄 적용받고자 선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적용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벤처기업 출자 소득공제의 공제시기와 관련하여 거주자별로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하는지 또는 해당 거주자의 투자처별로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은 거주자가 동일 과세연도 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 다른 투자처에 각각 출자·투자한 경우에는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분마다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42, 2016. 11. 1.), 동일한 과세연도에 복수의 투자처에 투자한 거주자는 각각의 투자처마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과세연도를 다르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결정례·판례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 조 한 철 Partner

han-chul.cho@pwc.com  
02-3781-2577

## 정 재 훈 Partner

jae-hoon\_3.jung@pwc.com  
02-709-0296

## 김 태 훈 Partner

taehoon.kim@pwc.com  
02-3781-2348

## 공 성 덕 Managing Director

seongdeok.kong@pwc.com  
02-709-7056

## 조 영 현 Director

young-hyun.jo@pwc.com  
02-3781-9238

## 이 민 재 Director

min-jae\_1.lee@pwc.com  
02-709-8320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ption](#).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